

학교 법인 나가누마 스쿨

학납금 납부·환불 규정

1. 목적 · 대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나가누마스쿨의 홈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전형료, 입학금, 수업료, 시설 이용료(시설비), 교재비등 및 특별 클래스비, 기초 과목 수업료, 대학원 진학 지도 수업료, 일본어 능력 시험 대책 수업료 등의 비용을, 입학 희망자 및 재학자가 납부하는 경우 및 납부한 비용을 환불하는 경우의 기준으로서 정한다.

나가누마 일본어 온라인 코스에 대해서는 나가누마 일본어 온라인 코스 규약으로 프라이빗 레슨에 대해서는 프라이빗 레슨 규약으로 각각 정하므로 그것을 참조할 것.

2. 납부금의 납입

납부금은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납입한다.

납부금은 수업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납입한다.

납부금은 입학시에 1년을 넘는 납입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납부금의 환불

- ①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전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신청을 취하한 경우 전형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 ②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전형료를 제외한 전납부금을 환불한다.
- ③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후 전형료 외 납부 전 입학 취소한 경우 전형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 ④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는 교부되었지만 입국 사증(비자)의 신청을 실시하지 않고 일본에 오지 않은 사람은 전형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전 납부금을 환불한다. 그 때 납입자는 입학 허가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반환의 의무가 있다.
- ⑤ 재외 공관에서 입국 사증(비자)의 신청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일본에 오지 못한 경우 전형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전 납부금을 환불한다. 그 경우 납입자는 입학 허가서의 반환과 재외 공관에 있어서 사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 ⑥ 입국 사증(비자)을 취득했지만 일본 방문 이전에 입학을 사퇴했을 경우 전형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전 납부금을 환불한다. 그 때 납입자는 입학 허가서의 반환의 의무가 있다.

- ⑦ 입국 사증(비자)을 취득하여 일본에 방문해 입학일 이전에 입학 사퇴했을 경우 전형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전 납부금을 환불한다. 납입자는 입학허가서를 반납할 의무가 있다.
- ⑧ 입국 사증(비자)을 취득하여 일본에 와서 입학했지만 입학일 이후에 입학 사퇴했을 경우 중도 퇴학과 동등하다고 간주하여 전형료와 입학금 및 이미 시작 된 학기의 수업료, 시설비, 교재비 등은 환불되지 않는다. 단, 입학사퇴일 이후의 아직 개시되지 않은 학기의 수업료, 시설비, 교재비 등은 환불한다.
- ⑨ 단학기 프로그램 또는 장기 코스에 재학해 다음 학기도 계속할 예정이었지만학기의 개시 2주 전까지 사퇴했을 경우 납입한 아직 개시되지 않은 학기의 수업료, 시설비, 교재비 등을 환불한다.
- ⑩ 단학기 프로그램 또는 장기 코스 입학 예정으로 아직 개시되지 않은 학기의 개시 2주 전까지 입학 사퇴한 경우 전형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전 납부금을 환불한다.
- ⑪ 팬데믹 등 당 법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에 의해 온라인 등을 활용한 수업이 된 경우에는 상기 ①~⑥과 상관없이 일체의 납부금의 환불 또는 감액은 하지 않는다. 퇴학의 경우에는 「4. 퇴학에 의한 납부금의 환불」에 따른다
- ⑫ 납부금의 환불에 따라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송금 수수료는 납입자 부담한다.

4. 퇴학으로 인한 납부금 환불

환불되지 않는다. 단, 퇴학계가 제출된 시점에서 아직 개시되지 않은 학기의 수업료, 설치비, 교재비 등은 환불하는 경우가 있다.

5. 징계에 의한 퇴학의 경우에 있어서의 납부금의 환불

학칙에 정해진 징계에 의한 퇴학의 경우는 일체의 납부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6. 본 규약은 일본어를 원문으로 하며 일본어 이외의 언어에 의한 참고번역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해석은 일본문 원문으로 합니다.

7.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본 규정을 2024년 4월 23일부터 개정한다(개정 장소 5.)

이 규정을 2025년 7월 1일부터 개정한다(개정 부분 1. 2.⑧⑨⑩⑪⑫ 3. 4. 5.)